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설명회



2022. 1. 13

중 소 기 업 산 학 협 력 센 터

목 차

I . 안내사항	1
II .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6
III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4
IV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54
V . 공통사항	64
VI . 기타사업	75

* 관심 세부사업은 필히 세부사업공고 및 제출양식 참고

* www.smttech.go.kr 사업공고, www.kumoh.ac.kr 상단배너 공고 참고

I. 안 내 사 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접수 일정 안내(현재 공고 기준)

순번	사업명	접수기간	온라인접수시스템
1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2021.12.15.(수)~2022.01.17.(월)	http://www.smtech.go.kr
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현장형R&D)	2021.12.15.(수)~2022.01.17.(월)	http://www.smtech.go.kr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상반기) *대상사업 :디딤돌 첫걸음(자유공모),디딤돌(사회문제해결형) 전략형(디지털혁신, 성장동력, 백신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그린뉴딜, 대-스타 해결사플랫폼연계)	2022.1.12.(수)~2022.01.26.(수)	http://www.smtech.go.kr
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하반기) *대상사업 :디딤돌첫걸음(창경센터추천) 전략형(BIG3, 백신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그린뉴딜, 대-스타해결사플랫폼연계)	2022.02~03월 접수예정	http://www.smtech.go.kr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022.1.10.(월)~2022.01.28.(금)	http://www.smtech.go.kr
6	산학연 Collabo R&D사업(예비연구)	2022.02.07(월)~2022.02.14.(월)	http://www.smtech.go.kr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반기, 4월 지원과제) *대상사업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2022.01.17(월)~2022.02.03.(목)	http://www.smtech.go.kr
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반기, 5월 지원과제)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BIG3,비대면•서비스,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2022.02.03(월)~2022.02.24.(목)	http://www.smtech.go.kr
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하반기, 7월 지원과제) *대상사업: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2022.04.11(월)~2022.04.25.(월)	http://www.smtech.go.kr
10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2022년 1월~2월 접수예정	http://www.iris.go.kr
11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R&D사업	2022년 1월~2월 접수예정	http://www.iris.go.kr

* 2022년도부터 범부처 연구관리시스템인 IRIS시스템으로 통합, 위 내역사업(1~9번)을 제외하고는 IRIS시스템으로 과제신청 예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주요사업 예산 전년도비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2021년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132
	시장확대형	307	787
	시장대응형	120	528
	강소기업100	125	85
	소부장 전략	105	118
	소부장 일반	132	96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544	738
	전략형	235	503
	디딤돌	399	810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148	180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547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34

■ 전년도와 달라진 점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과제 신청 전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상·하반기 포함 1회만 신청·접수 가능
- 디딤돌 첫걸음(창경센터 추천과제) 신설 : 2차 하반기 신청접수

2) 산학연 Collabo R&D사업

- 2022년 산학연Collabo R&D사업 예비연구(**기관매칭과제**) 신설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재도약) :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 참여

* **지원유형 : 4차 산업혁명 또는 중소기업성장기반 내 자유공모**

-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일반(재도약) 신설** :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 참여

'22년 달라지는 점

1 선정 평가지표 개선

✔ 과제책임자 등의 참여 의지와 연구역량 보유 여부의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 신설

평가항목	기 존('21년)	변 경('22년)
기술성	- 창의·도전성(10)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15)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10)	- 창의·도전성(15)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15)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10)
사업성	-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20)_폐지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20) - 고용친화도(20)_폐지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20)
기술개발역량	-	평가지표 신설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15) - 연구윤리(5)
파급효과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5)
자금집행계획	정책부합성(5)_폐지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5)

'22년 달라지는 점

2 자금 집행계획 신설

☞ 자금집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집행계획표를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반영

비목	항목	1차년도(천원)				2차년도(천원)				합계 (천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직접비+간접비)										

* 작성 요령 : 1차년도는 연구개발 시작일로 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작성예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이 2022.6.1. ~ 2024.5.31.(2년)인 경우
 - 1차년도 2022.6.1. ~ 2022.12.31.(7개월)
 - 2차년도 2023.1.1. ~ 2023.12.31.(12개월)
 - 3차년도 2024.1.1. ~ 2024.5.31.(5개월)

* 해당 집행계획표 서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정부 R&D과제 수행이력 제출 의무화

☞ 특정 기업 지원 편중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수행이력 제출 의무화 반영

* 정부 R&D과제 수행이력 미입력 및 누락 시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II. 2022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예비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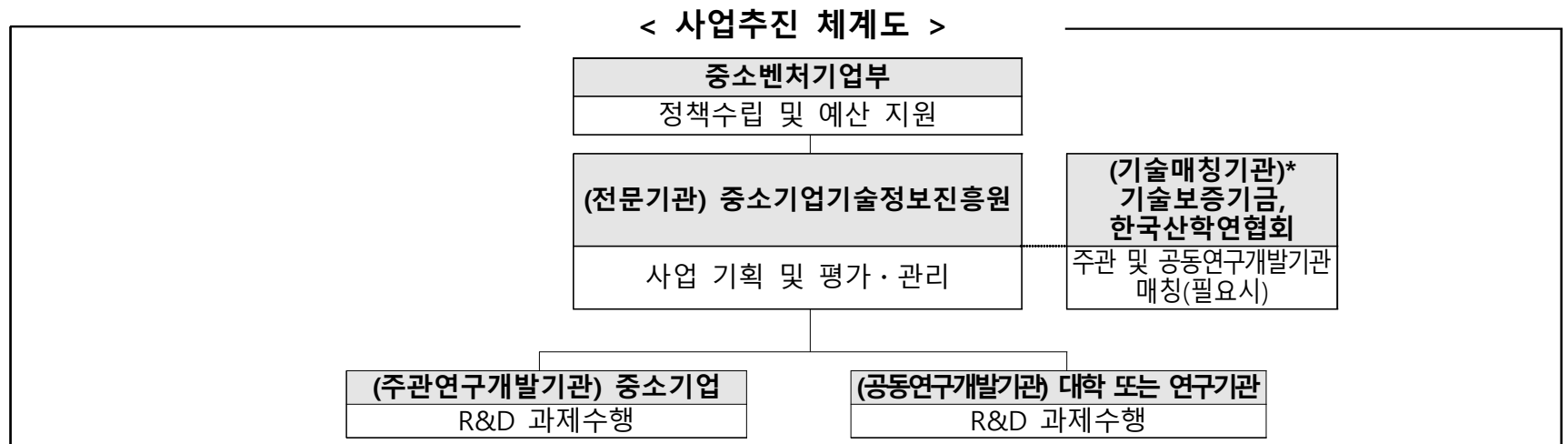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 1단계 예비연구 기관매칭 track을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는 기술매칭기관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절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매칭기관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문의처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57억원, 446개 과제

구 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자율매칭	중소기업, 대학	228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원
		기관매칭	중소기업, 대학	40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중소기업, 대학	47개 내외	2년, 2~4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21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자유응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1단계) 예비연구 → (2단계) 사업화 R&D

○ 1단계 예비연구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상위 50%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 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 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
 -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 공동책임자 범위 >

◇ **대학 :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 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

② 신청자격 검토

- (기 수행이력 검증)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의 과학기술인번호로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수행(위탁연구 포함) 이력 조회
 - 공동수행 이력은 1단계(예비연구)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NTIS*에 등록된 과제 기준으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기 수행이력 검증 관련 참고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기관-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개인) 간의 공동수행이력은 기 수행이력과 무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간(기관-개인)의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 단, 수행이력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의 과제 공동수행 이력 중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경우는 기 수행이력에서 제외(신청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단계(예비연구) 신청 시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제출 필수**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중 완화
 - (기존) 25% 이상 → (개선) 2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예비연구(1단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최대 8개월, 5천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 시 납부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편성 예시>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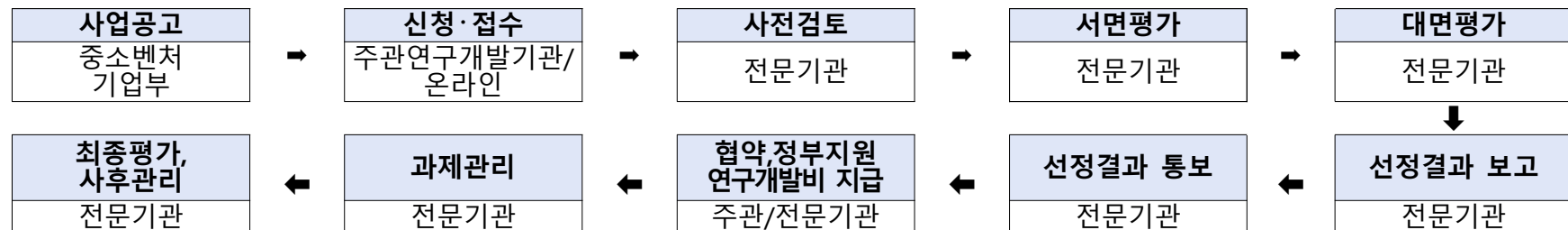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8개월)	50,000	1,250	11,250	12,500	62,50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2	18	20	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천만원/8개월 지원한 경우를 가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1,250천원)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500천원)의 10%임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① 예비연구(1단계) 추진절차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동점차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12. 30(목) ~ 2. 14(월) 18:00시 까지
- 접수기간
 - (1단계 예비연구) 2022. 2. 7(월) ~ 2. 14(월)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① 예비연구(1단계)

○ 공통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1차 서면 평가 통과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③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	
④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7. 지원유형

☐ 산학협력 예비단계(기관매칭)

- 기관매칭기관 : (사)한국산학연합회, 기술보증기금
- 접수방법 : SMTECH시스템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신청과 동일
- 접수기간 : 2022. 2. 7(월) ~ 2. 14(월) 18:00시 까지
- 기관매칭 방법
 - (사)한국산학연합회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plus>) 접속 → “기술파트너매칭” 진행 후 접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별첨 자료 참고
 - 기술보증기금 : 신청서 제출후 접수 가능(추후 공지 안내 예정)

산학연 Collabo R&D 기관매칭 Track안내 기술매칭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 한국산학연협회 기술매칭서비스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공공·민간분야의 기술파트너 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R&D 추진 및 기술혁신 촉진
-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Collabo R&D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무료로 발굴하여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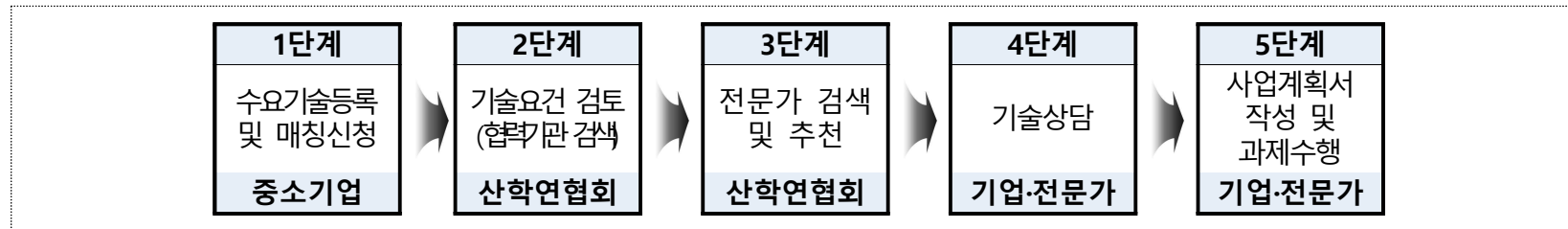
□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의 “기관매칭” 유형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적합한 공동연구개발기관 발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 중소벤처24 기술파트너 매칭서비스 이용

▶ 기술파트너 매칭신청 방법

- ① 중소벤처24 접속 (<https://www.smes.go.kr/plus>)
- ② 더 많은 서비스 → 기술파트너매칭 → 기술매칭서비스 안내
- ③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작성항목에 맞춰 내용 입력
 - 신청서 작성 시 우수사업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음
(산학연Plus시스템 : <https://plus.auri.go.kr/post/best-biz>)
 - 입력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추진절차) 중소기업이 입력한 수요기술을 관리기관(한국산학연합회)이 검토하여 적합한 대학·연구기관을 발굴하여 연계



- 중소기업은 매칭된 대학·연구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접수기간에 산학연 Collabo R&D 신청

관련 문의	한국산학연합회 연구기반팀 박형순 선임 ☎ 044-410-3323 / ✉ hspark@auri.go.kr
-------	--

참고

신청매뉴얼

□ 중소벤처24 접속 * 비회원 기술매칭신청 가능



□ 기술애로 등록

- '더 많은 서비스' > '더 많은 서비스 전체보기' > "기술파트너 매칭"

사업 신청

증명서 발급

맞춤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

고객센터

검색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 전체보기

중소벤처기업부 법정민원신청

전문기업 조회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유관시스템 둘러보기

중소벤처24 유관시스템 둘러보기

거래종합포털	수탁·위탁기업간 법률자문/분쟁조정 지원, 공정거래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위한 성과관리, 아카데미 및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합니다	바로가기
거래정보	M&A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M&A 추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바로가기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및 유공 포상 등의 신청을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Green-Biz	우수한 녹색경영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우대 정책을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비즈니스 지원단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전문가 등록 Pool 입니다	바로가기
정보 시스템	기업간 협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기술파트너매칭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개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칭해 드리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인사업무관리시스템	인력 양성 및 취업 기반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가기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성공을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지식포털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단계별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혁신 기업을 선별하며 각종 우대 제도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회의실포털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화상 회의실을 빠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서비스 안내 확인 및 '신청하기' 클릭

한국산학연합회 기술매칭서비스 안내

한국산학연합회 기술매칭서비스란?

- 기술력제고 및 신제품 개발 등 애로기술 해결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개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연구기관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매칭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싶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 공동 R&D 개발을 진행하고 싶지만 전문가를 찾지 못한 기업

기술매칭서비스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내 확인 후 페이지 최하단에서 '신청하기(**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Home > 분야별 서비스 > 기술파트너매칭 > 기술파트너 > 기술매칭 신청

기술매칭 신청

1. 신청기업 정보

신청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Collabo R&D 사업에 참여의향이 ☐ 있음 ☐ 없음		
신청기업명	기업명을 입력하십시오		
주소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매출액(원)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상시종업원수(명)	4대보험 가입자 기준
기관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전화
	이메일		

- * 신청기업정보를 간략하게 입력하고 매칭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 상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출액, 상시종업원수를 정확하게 기재

2. 개발기술 내용

- ※ 각 항목별 분량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완료 시 <붙임>신청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필요 시 기업 및 제품 홍보자료(브로셔, 카달로그 등)를 별도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술명	구체적인 기술 개발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 분류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기술분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 필요성, 기대효과(국내외 판매처, 사업화 계획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작성		
기술개발 목표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목표 달성 성능지표 등)에 관한 내용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기술개발 준비 현황(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출원/등록번호), 선행연구 등) 및 기술개발 애로사항(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		
기술전문가 매칭 희망사항	공동기술개발 희망 기관명(대학/연구기관) 및 전문가 기술 분야(학과, 전공, 전문분야 등)		
키워드(한글)	키워드(한글)를 입력해 주세요		
키워드(영문)	키워드(영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시스템에 기술매칭 신청 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업로드 하세요.

다운받기 (붙임)신청정보 이용 동의서.hwp

File name	File size	Action

- ① 15~30페이지로 작성("7. 연구개발 자금집행 계획"은 제외한 쪽수 기준)
- ② 작성시 본문 1 작성요령(전사업용) 및 파랑색 가이드 문구(콜라보용) 등 함께 참고
- ③ 작성요령 및 파랑색 가이드 문구는 제출시 삭제

1. 1단계 예비연구의 필요성

- 개발 대상기술의 아이디어 또는 제품의 개발 필요성을 서술하되, 예비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

1) 산학연협력연구 추진 필요성

- 대상 기술개발의 특성상 기업의 단독개발 보다는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적시
- 산학협력과제 또는 산연협력과제의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예비연구 추진에 있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협력연구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혜택을 서술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 및 상호신뢰 확보를 위한 정기미팅, 연구노트작성, 연구기관의 노하우 전수 등 서술

2) 기존기술(제품)과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제품) 및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 방향, 향후 전망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명시)

2.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1) 1단계 예비연구 개발 목표

- 1단계 예비연구 개발 목표 작성, 예비연구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최종산물(시제품, 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표> 예비연구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방법

- 본문2의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입력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주요 성능지표 개요 ＞							
주요 성능지표 ¹⁾	단위	예비연구 개발목표 ²⁾	최종 개발목표	기술개발전 수준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 요구수준 ³⁾ (해당기업)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⁴⁾ (%)	평가방법 ⁵⁾
Nozzle Gap	μm	00μm이하	00μm이하	00μm	70μm((주)0000)	40	공인 시험·인증기관
압력	Psi	00Psi이상	00Psi이상	00Psi	1,000Psi((주)0000)	30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 수행
Contamination	%	00% 이하	00% 이하	00%	0.001%((주)0000))	20	공인 시험·인증기관
나노입자 크기	nm	00nm이하	00nm이하	00nm	60nm((주)0000))	10	외부기관 의뢰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시료 정의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시료정의	측정시료 수 ⁶⁾ (n≥5개)		측정방법 ⁷⁾ (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Nozzle Gap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00 μm 이내)			
압력	나노 분말의 분산 시 가해 지는 압력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기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시료 의 압력으로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Contamination	최종 분산 후 분말의 불순물 함량	5		XRF 또는 XRD를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성분석 실시 후 ICP 분석을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량 분석 실시			
나노입자 크기	초고압 분산 및 분급 후 분 말의 입자의 크기	5		나노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분석 (00 nm 이하)하는 것으로 외부기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			
※ 시료수 5개 미만 (n<5개)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업화시에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

* 주2) 예비연구 목표는 최종 목표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

- * 주3) 사업화 할 경우에 목표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의 요구수준 등 타당한 기준을 제시
- * 주4)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 주5) 평가방법은 ①공인 시험인증기관, ②외부기관 의뢰, ③수요기업 평가 중 하나를 기재하되, ①~③이 모두 불가한 경우 수행기관 자체평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로 기재하고 사유 명시
- * 주5)-1 수행기관 자체평가시,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참여자(과제책임자 포함), 시험목적,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비 구성, 시험방법 및 절차, 시험결과를 반드시 포함
- * 주6)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기재
- * 주7) 측정방법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시험이 불가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표준, 규정, 매뉴얼 등), 측정환경 등을 기재
- * 주8) 서비스 분야 R&D 등 성능목표 제시가 곤란한 과제의 경우 시장평가(최종소비자단 평가, user 수 달성, 고객만족도 달성 등)로 성능목표 대체 가능

2) 기술개발 최종 목표

(1) 산학연 Collabo R&D 기술개발 최종 목표

- 2단계(사업화R&D) 최종 개발완료 후 예상되는 목표를 개발결과물(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술
(적용분야, 적용기술, 주요성능 등을 제시)
- 개발결과물 명확히 제시(예. 000 알고리즘, 000 시스템 등)

(2) 산학연 Collabo R&D 단계별 목표 개요

- 예비연구 단계, 사업화R&D 단계별 달성해야 하는 주요내용(사업성, 주요성능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술

구 분		목 표
기술개발 최종목표		◦ 1단계 예비연구 ~ 2단계 사업화R&D 포괄하는 최종 목표 작성
구분	(1단계) 예비연구	- 최종 개발 목표 실현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 목표 작성
	(2단계) 사업화R&D 1차년도	- 최종 개발 목표(주요 성능 등)
	(2단계) 사업화R&D 2차년도	- 최종산물의 사업화 목표

3) 예비연구의 방법 및 내용

- 아이디어/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관점에서 예비연구 활동을 서술

(1) 예비연구 기술성 검증

- 기술성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 예시: 메커니즘 규명 / 기초물성 분석, 물질 합성 / 시작품 제작, 제품(기술) 시연 / 시뮬레이션, 제품(기술) 성능검증 / 유효성평가, 알고리즘 개발 / 시스템 설계, 제품(기술) 최적화 등
- 예비연구 단계를 통해 사업화R&D 단계로 연결되는 기술개발 가능성 등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내용

◦
-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내용

◦
-

(2) 예비연구 시장성 검증

- 시장성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 예시: 제품 용도 개발(타겟시장), 제품 시장 조사, 고객 수요 확인, 제품성 분석 등
- 판로확보, 수출, 시장분석 자료 등 시장성 확보 방안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내용

-
-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내용

-
-

(3) 예비연구 사업성 검증

- 사업성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 예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 규제/환경 대응전략 수립 등(산학, 산연협력기술개발 지원과제 공통)
- 특히 산연협력기술개발 지원과제는 본 연구(2단계 사업화R&D)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사업성 분석 자료 등 사업화 목표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내용

-
-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내용

-
-

4) 1단계 예비연구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 예비연구 단계의 기술개발 추진 일정을 서술
- 시험·인증 등 외부활동 계획 시기 등

○

-

*

<표> 세부 추진일정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공동/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예비 연구	1. 예) 매커니즘 규명										
	2. 예) 제품 시연										
	3. 예) 고객 수요 확인										
	4. 예) 제품성 분석										
	5. 예) 사업화 계획 수립										
											

3. 1단계 예비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1단계 예비연구의 추진전략·방법

2) 1단계 예비연구의 추진체계

<표>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수행기관	담당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비중(%)
	기술성 검증	시장성 검증	사업성 검증	
주관 연구개발기관	예) 물질합성/시작품제작	예) 제품용도개발	예) 비즈니스모델 개발	
	예) 제품시연/시뮬레이션	예) 제품시장조사	예) 사업화계획 수립	
	예) 제품 최적화	예) 고객수요확인		
공동 연구개발기관	예) 메커니즘규명/기초물성 분석	예) 제품성 분석	예) 규제/환경 대응전략 수립	
	예) 제품성능검증/유효성 평가		예) 지적권 확보전략 수립	
	예) 알고리즘 개발/시스템 개발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외주용역처리) 주관기관의 추진체계에는 없으나 mock-up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 기술개발 비중 :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

4. 1단계 예비연구-2단계 사업화R&D 연계 방안

1) 1단계 예비연구 성과의 활용방안

- 예비연구(1단계)-사업화R&D(2단계) 연계 방안 중심으로 기술
- 예비연구(1단계)는 사업화R&D(2단계) 산학연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본연구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 이러한 관점에서 예비연구(1단계) 수행 결과와 사업화R&D(2단계)와의 연계방안을 연차별로 서술하고, 예상 예비연구결과를 근거로 2단계사업의 필요성 및 연관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작성

2) 1단계 예비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내용 현황 및 계획

1) 국내외 시장 동향

- 예비연구 단계 간략히 작성 가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1) 국내외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2)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한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을 서술

3) 표준화 전략(해당시 작성)

- 예비연구 단계 생략 가능

4) 사업화 계획

- 예비연구(1단계) 및 사업화R&D(2단계)를 포함하여 총 개발기간 동안의 사업화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완료 후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 투자계획, 생산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본문 가이드 참고):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3) 표준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사업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자금집행 계획

※ (1단계 예비연구만 기재)

7-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 접 비	인 건 비	내부인건 비(A)	현금									
			현물									
		외부인건 비(B)	현금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 인건비(D)											
	총 인건비(E=A+B+C+D)											
	연구시설· 장비비(F)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직접비 소계 (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C)는 비영리기 관에만 해당됨

< 회계연도 기준 연구개발비 현금 집행계획표(안) >

(단위 : 백만원)

차수	기관구분	해당연도 총 금액 (A)	연구개발기간 집행 계획 금액					집행률 (B/A*10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B)	
0차 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							
	소계							
0차 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							
	소계							

※ 1차년도는 사업시작일로부터 해당연도 12.31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이 2022.6.1. ~ 2024.5.31.(2년)인 과제의 경우

- 1차년도 2022.6.1. ~ 2022.12.31.
- 2차년도 2023.1.1. ~ 2023.12.31.
- 3차년도 2024.1.1. ~ 2024.5.31.

(2)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연차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단가, 수량 등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작성하되,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황표 및 7-2.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이 필요함

o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 인건비(D)											
	총 인건비(E=A+B+C+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 연구수당의 경우 중소기업은 수정인건비(E2)의 20%이상을 계상. 연구수당 비율은 수정인건비 대비로 계상하며, 수정인건비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음
- 간접비(L)에는 간접비 총액을 작성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직접비 현금의 총 합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포함)은 직접비(현금)의 10%이내, 비영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계상 할 수 있음

o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인력 구분	성명	직위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내·외부 및 지원 구분*	신규/ 기존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 (C)	합 계 ((A/12)×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원 (기존)	홍길동	소장	내부	기존						
			외부	-						
	소계(D)									
참여 연구원 (신규)	강감찬	교수	내부	신규				()		()
		학생								
	소계(E)									
비영리 지원 인력	강감찬	선임 행정원	지원	신규						
	소계(F)									
총액(G=D+E+F)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4대 보험과 퇴직총당금의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2호 참고)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공고문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실습연구원 :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실습으로 명기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o 학생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해당 시 작성_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공동연구개발기관1 : 기관명]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 인건비(D)											
	총 인건비(E=A+B+C+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금오공대 산학협력단 간접비 고시 비율 : 직접비의 29.4%】												
연구개발비 총액(L=J+K)												

o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인력 구분	성명	직위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내·외부 및 지원 구분*	신규 (청년의무/ 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실습)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해당 차수 인건비 계상률 (%) (C)	합 계 ((A/12)×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원 (기존)	홍길동	소장	내부	시간선택						
			외부	-						
	소계(D)									
참여 연구원 (신규)	강감찬	교수	내부	신규						
		학생								
	소계(E)									
비영리 지원 인력	강감찬	선임 행정원	지원	신규						
	소계(F)									
총액(G=D+E+F)										

o 학생인건비 현황표(x차년도) ※ 해당 시 작성_당해연도 내용만 작성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7-2.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 기관	구축연 도	연구시설·장비명	구축방식*	사용용도 (규격)	수량	구축비용 (천원)	구축(설치)일	설치장소
(주)0000	2022	워크스테이션	구매		1	30,000	'22 6월	(주)0000 부설연구소
	20xx							

* 개발, 구매, 임대 등

(2)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연구개발 기관	구매연도	연구재료	사용용도	구입량 (g)	구매비용 (천원)	구매(입고)일	사용처
(주)0000	2022	Fe계 금속파우더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1,000g	30,000	'22 6월	공장
	20xx						

(2-1)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연구개발 기관	구매연도	연구재료제작 항목	사용용도	구매비용 (천원)	제작기간	입고일	사용처
(주)0000	2022	4m급 3D프린팅 출력 장비 하우징(케이지)			‘21.6~12	‘22 12월	(주)0000공장
	20xx						

(3)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연구개발 기관	연도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사	소요비용 (천원)	용역기간	결과물
(주)0000	2022						
	20xx						

(3-1)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그 밖의 비용)

※ 상기 내역 산정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연구개발 기관	연도	명칭 (구분)	방식	사용용도 (업체)	수량 (건)	소요비용 (천원)	사용(이행)기간	설치장소 (결과물)
(주)0000	2022	Ansys (소프트웨어 활용비)	임대	구조 설계 및 해석	1	30,000	'22.1~12	부설연구소
	2023	논문게재료 (그 밖의 비용)	출판/ 발표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2	1,000	'22.9~11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외주용역비에 이미 기재된 내역은 기재 불필요)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기재 불필요)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기재 불필요)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해당 비용 계상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기재 불필요)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4) 간접비 ※ 기업만 작성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가능함

연구개발 기관	연도	세부항목	세부내용	소요비용 (천원)
(주)0000	2022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전문가)	김○○(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10,000
		연구지원비		100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2,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Ⅲ.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전략형)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상·하반기 포함 1회만 신청·접수 가능
(예 : 상반기 첫걸음 신청한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세부과제 신청불가)
- 2. 하반기 지원 과제는 2~3월에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별도의 접수 공고 예정
-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 4.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지원체계	내역사업	세부 과제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첫걸음	디딤돌	자유공모
		기관추천		창경센터추천*
		사회문제해결형		기관추천
		대중투자연계형		사회문제해결형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	디지털혁신
	전략형	4차 산업혁명		BIG3
		BIG3		백신 원부자재
		그린뉴딜		성장동력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그린뉴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TIPS	TIPS	TIPS	TIPS
				* 16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하반기) 공고 예정(1~2월 중)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전략적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 지원 4차 산업혁명 -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 BIG3(신산업) 분야	- 미래 전략분야 지원 - 디지털혁신 - BIG3(신산업) - 백신 원부자재 - 성장동력 분야 -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기업부담완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대책> ❶ 연구비 부담 완화 ❷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❸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❹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 연장 시행(❶~❹ 작동) - 디딤돌 '첫걸음' 참여제한 재무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폐지
접수시기	2월(상반기), 6월(하반기)	1월(상반기), 2~3월(하반기)
신청가능 횟수	동일 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 신청 가능	연간(상/하반기) 내역사업 구분 없이 1개 세부과제 1회만 신청 가능

3. `22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1,268억원 내외(상반기 734개, 하반기 734개 내외)

< `22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계
			1차(상반기)		2차(하반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 ·접수	과제수 (예산)	신청 ·접수	과제수 (예산)	
디딤돌	첫걸음	자유 공모	1월	430개 내외 (470억원)	-	-	430개 내외 (470억원)
		창경센터 추천	-	-	1~2월*	320개 내외 (192억원)	320개 내외 (192억원)
	사회문제 해결형		1월	20개 내외 (22억원)	-	-	20개 내외 (22억원)
	기관추천		-		3월	130개 내외 (78억원)	130개 내외 (78억원)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계
		1차(상반기)		2차(하반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 ·접수	과제수 (예산)	신청 ·접수	과제수 (예산)	
전략형	디지털혁신	1월	100개 내외 (104억원)	-	-	100개 내외 (104억원)
	성장동력	1월	55개 내외 (57억원)	-	-	55개 내외 (57억원)
	BIG3	-		3월	150개 내외 (104억원)	150개 내외 (104억원)
	백신 원부자재	1월	25개 내외 (28억원)	3월	25개 내외 (19억원)	50개 내외 (47억원)
	소재·부품·장비	1월	26개 내외 (27억원)	3월	26개 내외 (19억원)	52개 내외 (46억원)
	그린뉴딜	1월	63개 내외 (71억원)	3월	63개 내외 (47억원)	126개 내외 (118억원)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연계	1월	15개 내외 (16억원)	3월	20개 내외 (14억원)	35개 내외 (30억원)
합계			734개 (795억원)	-	734개 (473억원)	1,468개 (1,268억원)

* 지역별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

※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90% 이내	자유공고
전략형	최대 2년, 3억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디딤돌과제-과제기간:2022.04.01.~2023.03.31)>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1.4	12.6	14	134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6	1	9.4	10.4	100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4백만원)의 10%임

4. 신청자격 등

-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단, 첫걸음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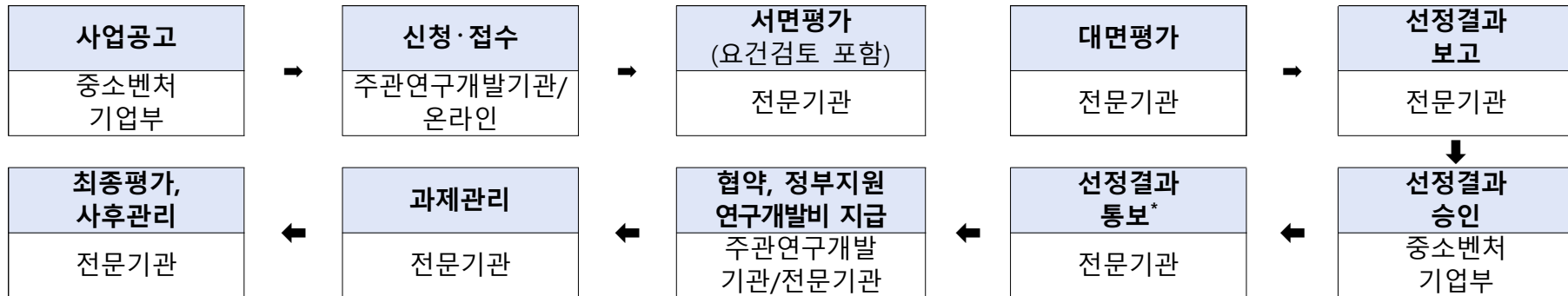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1차(상반기) 신청·접수기간 : '22. 01. 12.(수)~ 26.(수)
 - 2차(하반기) 신청·접수기간 : '22. 2~3월 중 접수 예정

6.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선정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 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20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해당	○	
⑩	창업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신청 및 발급	○	
⑪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위 서류와 SMTECH 시스템에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		○
⑫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⑬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마감일 이후 가점 증빙 추가제출은 불인정		○
⑭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⑮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⑯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⑰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가 내역 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세부 사업별 공고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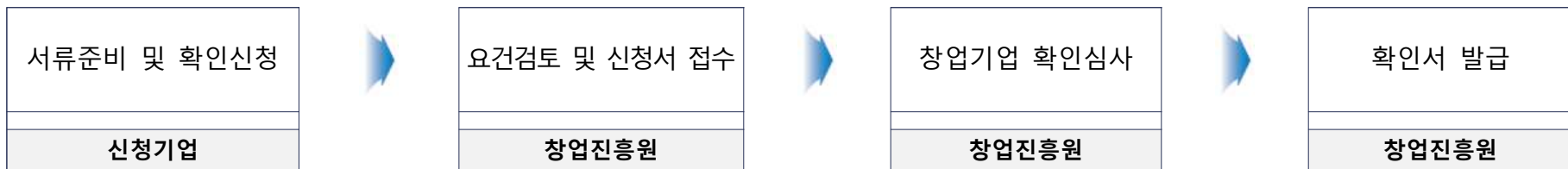
※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1.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되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규정 기일 10일 내 미포함 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기업 확인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이 늦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귀책 사유는 신청기업에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관(창업진흥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문의) 1811-3773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콜센터)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IV.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수출지향형		'21년 12월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BIG3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비대면·서비스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디지털융합				
	녹색전환				
	후불형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시장대응형	일반/재도약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강소기업100			'22년 2월 3일 ~ 2월 24일	3~4월	5월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22년 1월 17일 ~ 2월 3일	2~3월	4월
			'22년 4월 11일 ~ 4월 25일	5~6월	7월

※ 하반기 신청·접수 계획이 없는 세부과제는 상반기만 지원 예정이며 민간투자연계, 소부장전략 함께달리기, 시장대응형(기술혁신센터 연계) 과제는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지원분야 (품목)	<table> <tr><th>구분</th><th>분야 및 품목</th></tr> <tr><td>소·부·장</td><td>9대분야, 99개 품목</td></tr> <tr><td>4IR</td><td>20대 분야, 138개 품목</td></tr> <tr><td>비대면서비스</td><td>7대 분야</td></tr> <tr><td>BIG3</td><td>BIG3 3대 분야</td></tr> <tr><td>녹색전환</td><td>'22년 신설</td></tr> <tr><td>디지털융합</td><td>'22년 신설</td></tr> <tr><td>후불형</td><td>BIG3, 비대면, 4IR분야</td></tr> <tr><td>시장대응형</td><td>4IR분야</td></tr> </table>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99개 품목	4IR	20대 분야, 13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BIG3	BIG3 3대 분야	녹색전환	'22년 신설	디지털융합	'22년 신설	후불형	BIG3, 비대면, 4IR분야	시장대응형	4IR분야	<table> <tr><th>구분</th><th>분야 및 품목</th></tr> <tr><td>소·부·장</td><td>9대분야, 104개 품목</td></tr> <tr><td>4IR</td><td>23대 분야, 178개 품목</td></tr> <tr><td>비대면서비스</td><td>5대 분야</td></tr> <tr><td>BIG3</td><td>BIG3 중점분야 등</td></tr> <tr><td>녹색전환</td><td>녹색기술 소분야</td></tr> <tr><td>디지털융합</td><td>디지털기술 10대 분야</td></tr> <tr><td>후불형</td><td>全 분야</td></tr> <tr><td>시장대응형</td><td>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td></tr> </table>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104개 품목	4IR	23대 분야, 17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	BIG3	BIG3 중점분야 등	녹색전환	녹색기술 소분야	디지털융합	디지털기술 10대 분야	후불형	全 분야	시장대응형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99개 품목																																					
4IR	20대 분야, 13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BIG3	BIG3 3대 분야																																					
녹색전환	'22년 신설																																					
디지털융합	'22년 신설																																					
후불형	BIG3, 비대면, 4IR분야																																					
시장대응형	4IR분야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104개 품목																																					
4IR	23대 분야, 17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																																					
BIG3	BIG3 중점분야 등																																					
녹색전환	녹색기술 소분야																																					
디지털융합	디지털기술 10대 분야																																					
후불형	全 분야																																					
시장대응형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지원자격	<table> <tr><th>구분</th><th>분야 및 품목</th></tr> <tr><td>수출지향</td><td>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td></tr> <tr><td>민간 투자</td><td>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td></tr> <tr><td>BIG3</td><td>중소기업</td></tr> <tr><td>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td><td>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td></tr> <tr><td>강소 기업100</td><td>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td></tr> <tr><td>소부장전략</td><td>매출액20억원 이상 700억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td></tr> <tr><td>소부장 일반</td><td>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td></tr> </table>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민간 투자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BIG3	중소기업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 700억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table> <tr><th>구분</th><th>분야 및 품목</th></tr> <tr><td>수출지향</td><td>좌동</td></tr> <tr><td>민간 투자</td><td>(일반투자) 좌동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td></tr> <tr><td>BIG3</td><td>좌동</td></tr> <tr><td>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td><td>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신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td></tr> <tr><td>강소 기업100</td><td>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td></tr> <tr><td>소부장전략</td><td>매출액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td></tr> <tr><td>소부장 일반</td><td>(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이상,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td></tr> </table>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좌동	민간 투자	(일반투자) 좌동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BIG3	좌동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신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이상,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민간 투자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BIG3	중소기업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 700억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좌동																																					
민간 투자	(일반투자) 좌동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BIG3	좌동																																					
비대면 후불형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신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 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이상,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공고 및 접수시기	• (공고) 상반기 '21. 1 / 하반기 '21. 5 • (접수) 상반기 '21. 2 / 하반기 '21. 6	• (공고) 상·하반기 공고 통합 '21. 12 • (접수) 상반기 '22. 1 / 하반기 '22. 4
제출서류	• 서면평가 후 일괄 제출	• 신청·접수 시 일괄 제출
중점평가사항	기술성, 사업성 중심 평가	기술성, 사업성 外 추가 지표 도입 (신설) 연구역량 파급효과 연구비 집행 계획 등
기타사항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중복지원 방지) 내역사업별 1회 지원으로 신청 시 별도의 제한 없음 → 대면평가 시 중복성 검토 실시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1.12) ▪ (회계연도)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개발기간(연차)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3.3.31, 2차년도 : 23.4.1~24.3.31 ▪ (추천과제) 신설	▪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및 既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검사 강화 ▪ (부담완화) 코로나19 특별지침 연장을 통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22.12) ▪ (회계연도) 연차 및 회계연도 일치 적용 - (예시) 1차년도 : 22.4.1~22.12.31, 2차년도 : 23.1.1~23.12.31, 3차년도 : 24.1.1~24. 3.31 ▪ (추천과제) 기술혁신센터(지방중기청)를 활용하여 우수 기업 발굴·지원 - 시장대응형 우선 적용(하반기)

2. `22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1,745억원, 963개 과제 지원

< `22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내역사업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수출지향형	예산	132억	-	132억
	과제수	50개	-	50개
시장확대형	예산	678억원	109억원	787억원
	과제수	355개	75개	430개
시장대응형	예산	408억원	120억원	528억원
	과제수	227개	100개	327개
강소기업100	예산	85억원	-	85억원
	과제수	35개	-	35개
소부장전략	예산	118억원	-	118억원
	과제수	61개	-	61개
소부장일반	예산	72억원	24억원	96억원
	과제수	40개	20개	60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민간투자연계(시장확대형), 함께달리기(소부장전략), 기술혁신센터연계과제(시장대응형)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강소기업100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소부장일반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시장대응형/소부장-과제기간:2022.04.01.~2024.03.31)>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87.5	4.75	42.75	47.5	235	9개월
2차년도	250	6.5	58.5	65	315	12개월
3차년도	62.5	1.75	15.75	17.5	80	3개월
합계	500	13	117	130	630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9.4	-	-	20.6	100	

3.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

내역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문서 (세부공고참고)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붙임 ①, ②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10억원 이상 투자 받은 중소기업 - (일반투자)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I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스케일업 팁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최근 3년 이내 先투자(10억원 이상)를 받아 추천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BIG3) BIG3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BIG3 분야 內 유망기술분야 우대 (비대면서비스)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4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녹색전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녹색기술 10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디지털융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디지털기술 10대 중점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후불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①, ② + 별첨

내역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문서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①, ② + 별첨
강소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 * 강소기업100 R&D 과제 기 선정기업 제외	붙임 ①, ② + 별첨
소부장전략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붙임 ①, ② + 별첨
소부장일반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①, ② + 별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2년 1월 17일(월) ~ 2월 3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상반기, 5월 지원과제) '22년 2월 3일(목) ~ 2월 24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BIG3, 비대면·서비스, 녹색전환, 디지털융합),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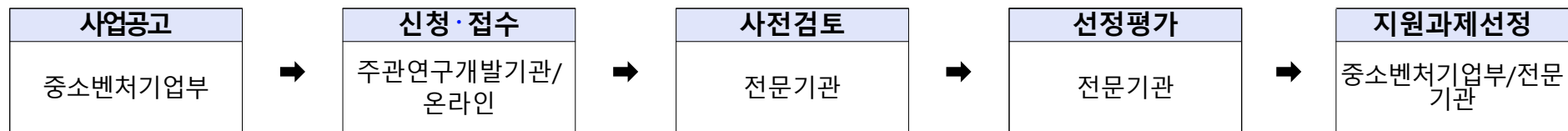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2년 4월 11일(월) ~ 4월 25일(월),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5.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⑩	신청자격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⑪	중소기업 확인서	○	
⑫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⑭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⑮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⑯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⑰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⑱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가 내역 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세부 사업별 공고문 참고

V. 공통 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중소벤처기업부 외 정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

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 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참조)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연구(1단계) 완료 후 사업화R&D(2단계) 완료 과제만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매뉴얼” 참고

□ 유의사항

①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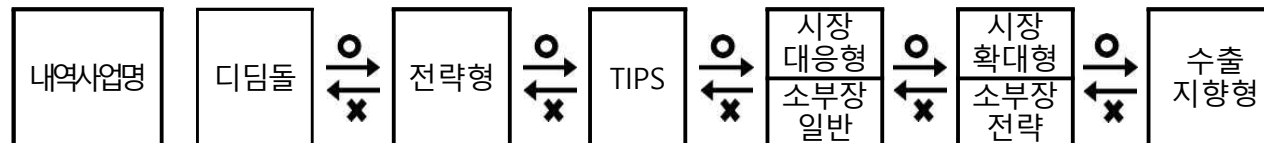
②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BM기획, 생활혁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 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 &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④ 상기 ③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㉓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㉔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⑤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 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⑦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

- ⑨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제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동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⑩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 명을 기입)

□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단, 지식서비스 및 SW개발 관련 과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50% 계산한도 예외 적용

*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업 7년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창업기업확인서)를 협약시 제출하거나,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예시) 청년인력 1명을 신규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청년신규채용 1명의 인건비 금액 한도 내에서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청년 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가·감점 : 사업 세부내역 공고 참고**

VI. 기타 사업 안내

(1)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2,582억 원(신규 957억 원, 계속 1,625억 원)

☐ 지원대상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투자처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852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 수요(투자)처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중소기업은 참여 제한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105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조달혁신 과제 한정 10억)	80%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등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80%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6개월 이내, 3천만원	90%이내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원	80%이내	

(2)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잠재력 있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75.53억(신규)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플랫폼)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맞춤형 지원거점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수행에 적합한 대학(5개)·연구기관(4개)

- 플랫폼(주관기관)은 9개 분야(일반제조(4개), 신산업(5개))* 별로 선정하되,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권역(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 (예시) 제조 일반분야 : ①기계·소재,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학 등

신산업 분야 : 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 ⑥5G/6G, ⑦실감형콘텐츠,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 (세부요건) 연구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종사자 수	R&D 집약도
5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5인 이상 ~ 100인 미만	2~4 이하(업종별 상이)

□ 지원내용

- (R&D기획) 플랫폼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도출 지원
- (협력R&D) 기업의 기술수요와 플랫폼 보유 역량간 체계적인 매칭 및 협력R&D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지원조건 : 최대 2년 4개월, 4.2억원 이내(정부출연금은 80% 이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지원 방식
	R&D기획	협력R&D			
산학협력 플랫폼(5개)	4개월 0.2억원	2년 3억원 이내	80% 이내	· (유형①) 협력R&D : 75개 · (유형②) R&D기획+협력R&D : 25개	자유 공모
산연협력 플랫폼(4개)	4개월 0.2억원	2년 4억원 이내	80% 이내	· (유형①) 협력R&D : 60개 · (유형②) R&D기획+협력R&D : 20개	

(3)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개요

-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1,132억원 (신규 674억원, 계속 458억원)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547억원)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127억원)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2022년도 시·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지역주력산업육성	2년, 4억원 내외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스타기업육성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 제한경쟁)

(4)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사업개요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 : 70억원 (신규 34억원, 계속 36억원)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등

□ 지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 (①바우처R&D)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③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개방형혁신바우처	1년, 2억원 내외	80% 이내	자유공모
공동활용R&D	1년, 4억원 내외		자유공모
융복합R&D	1년, 2억원 내외		자유공모

2022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지원개요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오른쪽 표 참조

☑ 신청방법

www.smttech.go.kr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회원가입→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문의사항

금오공과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관 203호

Tel 054-478-6672~4

구분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32	4년	20	80%	상반기	‘21.12월	1월	5월		
		시장확대형			787	2년	6	80%	상반기		1월	5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528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85	4년	20	80%	상반기		1월	5월		
		소부장전략			118	2년	6		하반기		4월	7월		
							80%	상반기	1월	4월				
							80%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810	1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6월			
		전략형	일반		366	2년	3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소부장		49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기후기금		118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TIPS			738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		BM개발			6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생활혁신기술개발			13	6개월	0.3	80%	상반기	4월	5월	6월		
협력 형 R & 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579	2년	5 (조달 10)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소특	43	2년	5	80%	하반기		4월	4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18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소특	50	2년	12	80%	하반기		4,7월	4,7월	6,8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30	6개월	0.3	9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R&BD(연계)		52.5	2년	6	80%	하반기		-	7월	
		R&BD(직접)		22.5	2년	6	80%	하반기	4월	4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3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46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5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 개발*	산학협력	R&D기획		5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협력R&D		32.6	2년	3							
		산연협력	R&D기획		4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협력R&D		33.9	2년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18.9	2년	4	80%	상반기	1월	1월	3월	
	성과공유형 공동기술개 발	과제기획			8	3개월	0.2	80%	상반기	‘21.12월	2월	3월		
		R&D			62	2년	10		하반기		6월	7월		
	정책 목 적 형 R & D	그린뉴딜유망기업 1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38	3년	12.5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50	2년	20	80%	하반기	3월	4월	6월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70	3년	15/30	80%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20	2년	8	80%	상반기	1월	2월	3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49	2년	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고도화	38	2년	10				2월	3월			
		현장형R&D			121	1년	0.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56.3	2년	5	80%	상반기	1월	2월	4월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53	2년	21	80%	상반기	3월	3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331	4	36	75%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4	3년	6	80%	하반기	-	6월	7월		
			Track 2		6	2년	4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15	2년	20	80%	-	3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	10	10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리빙랩 활용 R&D			17.5	2년	5	80%	하반기	3월	4월	7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R&D				76.5	1년	1.5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6개월	0.1	80%	-	1월	2월	상시		
		기반플러스형			63	6개월	0.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3개월	0.085		상반기	‘21.12월	1월	2~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80%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547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34	1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공공연구인력 파견지원			-	3년	연봉 50%	50%	-	1월	상시	상시			